

제1권 지식재산 제도

Chapter 1 지식재산 제도

1. 지식재산권 입문(1-p16)

(1) 지식재산권(법)의 분류

- ① 산업재산권(법)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 ② 저작권법
- ③ 신지식재산권법 :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식물신품종 등

(2) 특허권과 노하우의 비교

	특허권	노하우
공개여부	공개가 필수	공개×
성립요건	법에서 정하는 발명정의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별한 정의규정×
특허요건	필요	필요×
보호기간	일정기간만 보호	비밀이 유지되는 한 제한×
보호범위	청구범위 기재 발명	불명확
독점배타성	특허권자만이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가능	독점배타권×
침해에 대한 배제	특허법상의 민·형사적 구제 可	특허법상 구제×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형사상 절도죄 민법상 계약 위반

※ 영업비밀

- ① 의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부경법 제2조 제2호)
- ② 성립요건 :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Chapter 2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 및 권리화

1. 특허제도의 개요(1-p39)

(1) 목적

발명의 보호·장려 및 그 이용도모(사익=공익) → 기술발전촉진 → 산업발전 이바지

(2) 특허법의 기본 원칙

- ① 출원절차 : 권리주의,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 ② 심사절차 :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
- ③ 등록절차 : 등록주의, 특허료 납부주의
- ④ 기 타 : 서면주의, 양식주의, 직권주의

2. 발명(1-p47, 2-p121)

(1) 정의규정

- ① 내용 : 자연법칙 이용 → 전체적 이용(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BM)-완화)
일정한 반복가능성(100% 不要)
결과로서 인식(정확X)
이용X(경제법칙, 상품진열방법, 영구운동장치)
기술적 사상(객관성 有 -기능, 기예X)
창작(상대적)
고도한 것(고안과 구별-형식적 성립요건)
- ② 해결시 :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

(2) 종류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 생명공학 분야 발명(인정 추세)
-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자체-저작권법, 결합-특허법)

(3) 직무발명(발명, 고안, 창작)(2-p140)

- ① 성립요건
 - ▷ 종업원등(임원, 공무원 포함)이 직무(예정+기대)에 관해 발명을 할 것
 - ▷ 그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or 과거 직무에 속할 것
- ② 권리·의무
 - ▷ 종업원 : 특발권 원시적 취득
발명자 게재권
보상금 받을 권리
조정신청권
협력의무
발명완성사실통지의무
비밀유지 의무
 - ▷ 사용자 : 무상의 법정실시권(전범위)
예약승계권
출원유보권 등
동의권(특허권 포기 등)
조정신청권

보상금지급의무
승계여부통지의무

3. 특허요건 일반(1-p42)

(1) 특허요건 일반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기타 절차상 요건
1. 법 29①본문-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일 것 포함) 2. 법 29①-신규성 3. 법 29②-진보성 4. 법 32-불특허발명	1. 법 25-외국인의 권리능력 2. 법 33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3. 법 44-공동출원	1. 법 36①②③-선출원주의 2. 법 29③~⑦-확대된 선출원주의 3. 법 62Ⅲ-조약 규정에 반한 경우 4. 법 42③-발명의 설명기재방식 법 42④-청구범위기재방식 법 42⑥-다항제기재방식 5. 법 45-하나의 특허출원범위 6. 법 47② - 적법한 보정범위 (신규사항 추가금지) 7. 법 52①의 범위 위반 분할출원 8. 법 52의2①의 범위 위반 분리출원 9. 법 53①의 범위 위반 변경출원

(2) 주체적 요건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 이전 가능(목시적 계약 인정)

	출원 전 승계	출원 후 승계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승계인이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 不可 (일반승계 · 특정승계 불문)	상속 등 원인 발생시 → 단, 신고 要
특정승계		출원인변경신고 (효력발생요건)

▷ 질권설정 불가

- ② 무권리자(발명자 X 및 정당승계인 X)
 - ↳ 승계인 선의·악의 불문 / 선의(중용권, §103의2실시권 可)
 - ▷ 무권리자출원(§34)-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 ▷ 무권리자특허(§35)- 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판단 : 최명도 ㄴ 명도(전체)
 - ▷ 취급 : 무권리자 → §33①본문 위반
특허권의 이전청구 가능
 - ▷ 특허권의 이전청구 가능
설정등록일부터 이전등록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봄(특허권, 보상금지급청구권)
지분 이전 → 타 공유자의 동의 不要
- ③ 공동출원(§44) : 완성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있어야(창작에 실질적 기여)
특박권이 공유인 경우 모두가 공동출원 하여야 한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 ① 산업- 최광의(발명 자체 기준)
- ② 이용가능성- 실험·학술·개인 이용만 배제
- ③ 출원시 기준
- ④ 의료업(직접인체를 구성요소여부) - 동물한정(O) / 치료·비치료 효과 비분리(X) / 미용행위(O) / 일부 구성요소(X) / 진단행위: 임상적 판단(X(산업성O))
- ⑤ 경제성, 기술적 불이익, 타법상 허가 여부 불문

4. 출원서류(1-p61)

(1) 일반

- ① 출원서 : 서지적 사항, 제출연월일 - 임의
- ② 명세서 : 역할- 권리서 · 권리해설서로서의 역할
기술공개 문헌으로서의 역할
심사 · 심판대상을 특정하는 역할
 - ▷ 발명의 설명 (§42③): 통상의 기술자/ 쉽게 실시/ 명확·상세 + 배경기술기재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 포함
 - ▷ 청구범위 (§42④⑥)
 - 발명의 설명(도면 포함)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42④(1))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42④(2))
 - 구조·방법·기능·물질·결합 기재해야 (§42⑥, 선언적 규정)
- ③ 도면(협의를 물건발명, 실용신안등록출원 필수) → 특허(무효), 실용(불수리)
- ④ 요약서(기술정보용, 보호범위 판단X)

(2) 유예 : 청구범위기재유예 및 외국어출원 가능.
출원일~1년 2개월 이내/ 기한 다음날 출원 취하 간주

(3) 다항제 기재방법 (§42⑧)

시행령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① 법 제4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다기재 협범위의 원칙 :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보호범위는 좁아짐.

(4) 하나의 특허출원범위 (§45)

- ① 원칙) 1발명 1출원, 단) 1군발명 1출원 可
- ② 상호관련성있어야 하고 발명들이 동일 or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있어야 함.

5. 출원(1-p88)

(1) 보정

- ① 시기 : 특허결정등본송달전까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보정 I)
최후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보정 II)
↳ 보정 I 통해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재심사청구할 때(보정 III)
- ② 범위 : §47② 신규사항추가금지
(보정 I II III는 통지받은 거절이유에 한하지 않음)

(2) 분할출원

- ① 요건
원출원 - 계속中, 2 이상 발명
분할출원 - 명세서 등 > 명세서 등,
보정가능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등본송달받은 날~3개월/ 심판청구있어도)
+특허결정등본송달받은 날~3월 or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
- ② 효과(적법) : 출원일 소급

(3) 분리출원

- ① 요건 : 거절결정받은 자, 명세서 등 ≥ 명세서 등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서의 기각심결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가기간 가능)
- ② 효과(적법) : 출원일 소급

(4) 변경출원

- ① 요건 : 명세서 등 ≥ 명세서 등,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3개월 이내(연장可)
- ② 효과 : 원출원 취하 간주
- ③ 특허→실용 변경출원

(5) 조약우선권

- ① 파리협약의 3대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각국특허독립의 원칙)
- ② 시기적 요건 : 1년(특허·실용→1년, 디자인·상표→6월)
- ③ 효과(적법) : 판단시점 소급

(6) 국내우선권

- ① 요건 : 선출원(출원계속中, 특허·실용만 대상, 분할·변경출원X)
주장출원(명 vs 청, 1년)
- ② 취하 : 선출원일(개별적)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 선출원 취하간주
- ③ 효과(적법) : 판단시점 소급

6. 심사 및 등록절차(1-p68)

(1) 심사

- ① 심사주의(수정된 심사주의)
- ② 심사청구
 - ▷ 시기 : 출원일~3년내
 - ▷ 주체 : 누구든지
 - ▷ 취급 : 청구X-출원취하간주
- ③ 우선심사
 - ▷ §61(1) : 공개 후 제3자 무단실시
 - ▷ §61(2) : 긴급처리요
 - ▷ §61(3) :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거절이유통지→청구항별,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해야(보정각하결정예외), 출원일체의 원칙
- ⑤ 특허여부결정
 - ▷ 특허결정→작권보정 : 특허결정할 때
명세서·도면·요약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있는 경우
§47② 신규사항추가금지
특허료 낼 때까지 의견서(전부 또는 일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요약서). 특허결정 취소간주
작권 재심사 :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시(특허결정 취소)
 - ▷ 거절결정
 - ▶ 재심사청구
 - 특허결정등본송달받은 날~설정등록받기 전까지 또는
거절결정등본송달받은 날~3개월 이내(연장 가능, 심판청구 중 택일)
 - 단, 재심사청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 심판청구, 분리출원 제외
 - 출원인 청구/ 보정III
 - 청구O - 거절결정취소간주
 - 재심사청구 취하X
- ⑥ 출원공개 : 시기 → 출원일(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 후
조기공개 신청 가능(출원인만)
방법 → 공개용 특허공보, 전문공개, CD-ROM에 의한 공개방식.
효과 → 출원서류열람 가능, 경고 및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발생, 우선심사청구 가능
서류의 열람 신청, 공지기술로서의 이용
- ⑦ 보상금청구권
 - ▷ 요건 : 공개있어야
공개 후 제3자 특허발명 무단실시
서면경고있어야
경고(약의) 후 설정등록시(중지시)까지
 - ▷ 행사 등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 설정등록 후 행사,
특허권의 행사와 별개
- ⑧ 정보제공 : 출원中 가능, 누구든지
거절이유- §42③(2), §42⑧, §45

(2) 등록의 효력 : 특허권·전용실시권(효력발생), 통상실시권(제3자 대항)

(3) 설정등록 및 등록광고

7. 특허권(1-p102)

(1) 특허권의 효력

- ① 특허권 발생 : 설정등록에 의해
- ② 특허권 범위 : 지역 - 국내
시간 -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허가 등 + 등록지연)
내용 - 청구범위기재발명
- ③ 특허권 효력 : 업(개인적·가정적 실시 배제)
실시 : 물건발명 - 그 물건을 생사/양대수/양대·청약(양대전)
방법발명 - 그 방법을 사용 + 방법 사용의 청약(약의여야 침해)
제법발명 - 그 방법의 사용 등+그 생산물건 사/양대수/양대청(양대전)
실시행위의 독립성, 소모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국제적 소모이론)
- ④ 효력제한
 - ▷ 전용실시권 : 적극적 효력 및 소극적 효력 제한
 -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
 - 시험 or 연구목적실시
 - 국내통과불과 선박·항공기·차량 or 이에 사용기계·기구·장치 그밖의 물건
 -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약사법에 의한 조제의약·조제행위
 - ▷ 특허권 하자에 따른 효력제한
공지기술제외설(무효심결확정 전이라도 효력제한)
일부공지의 경우 : 유기적 결합 여부에 따라 구별
진보성 등이 없는 경우 : 자유기술의 항변 → 진보성 없어도(전체구성설)
문언침해도 적용
무효의 항변(X), 권리남용의 항변-무효 명백한 경우(O)
↳ 소송 : 무효 판단 O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효판단X
미완성발명, 선출원주의, 확선 위반 : 권리범위 부정
- ⑤ 보호범위
 - ▷ 기술적 범위 + 법률적 가치판단(소극적 효력만)
 - ▷ 구성요소완비의 법칙(AER) : 부가(침해), 생략(침해X)
 - ▷ 청구범위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해짐(§97). 발명의 설명 참조→요약서 참조X
 - ▷ 중심한정주의(확장해석 인정), 주변한정주의(확장해석 불인정)
 - ▷ 균등론 ↔ 역균등론
포대금반언의 원칙(출원경과 참조의 원칙) : 균등론 제어이론
 - ▷ 균등론 요건 → 과제해결원리 공통(기술사상의 핵심 무엇)
변경가능성(동일한 작용효과)
변경용이성
확인대상발명 공지기술(용이도출) 아닐 것
의식적 제외등 특단사정 없을 것
- ⑥ 이용·저촉 : 조정 → 허락/ §138 통상실시권허락심판

(2) 특허권의 변동

- ① 이전(청구항별X)
- ② 공유
 - ▷ 단독 可 : 실시
 - ▷ 동의 要 : 지분양도, 질권설정, 실시권설정
 - ▷ 모두 要 : 심판청구
- ③ 질권 설정 가능
- ④ 소멸 : 존속기간만료, 연차료 불납, 상속인 부존재,
포기(등록되어야), 무효심결 확정, 정정(심판)에서 청구항 삭제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
 청산사무 끝난 날 or 종결등기일~6월 중
 빠른 날의 다음날

(3) 실시권

	전용	허락통상	법정(통상)	강제
성질	독점배타성	독점배타성 X	독점배타성 X	독점배타성 X
발생	계약 및 등록	계약(등록 不要)	법정요건 만족시(9개)	특허청장의 처분 등(3개)
등록의 효력	효력발생요건	제3자 대항요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의 새로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허락에 의한 경우와 동일.
소극적 효력	有	無	無	無
이전	원칙: 특허권자 동의 예외: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실시사업과 함께인 경우는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X	원칙: 특허권자 동의 예외: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실시사업과 함께인 경우는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X	좌동	재정실시권: 오직 실시사업과 함께만 이전 가능/ 법 138 실시권: 자기 권리와 함께만 이전 · 소멸 가능
질권	특허권자의 동의시 가능	좌동	좌동	재정실시권, 법 138 실시권은 질권 설정 허용 X

- ▷ 법정실시권 중 선사용권(§103) [무상] 출원시(실시준비), 동일루트(X), 정당권리자(O)
 중용권(§104) [유상] 후출원(무효), 청구등록 당시
 저촉(§105) : 디자인권자(무상, 디자인권 범위),
 실시권자(유상, 실시권 범위), 저촉(존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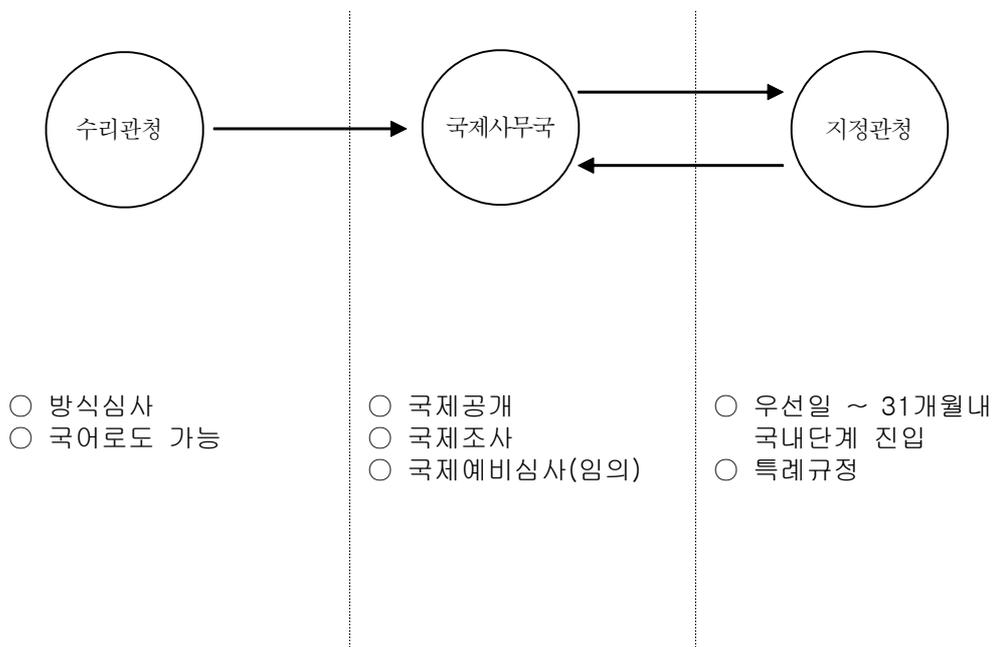
8. 조약

- ① 파리협약
- ② WTO/TRIPs :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
파리협약 준수 의무 천명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유보적 입장
- ③ 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

9. 국제출원(1-p116)

(1) 의미 : 다국가 1출원 시스템(단일출원)

(2) 국제출원 처리 절차



(3) 지정국 선정기준 : 시장, 기술력, 권리의 유효성, 비용, 시간 등

10. 실용신안법(1-p128)

	특허	실용신안
보호대상	발명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성립요건 중 차이점	고도성 要	고도성을 요하지 않음
진보성	진보성 판단시 '쉽게'	진보성 판단시 '극히 쉽게'(낮은 수준의 진보성)
부등록사유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
존속기간연장	허가 등 + 등록지연	등록지연
도면첨부요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첨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수리 처분됨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3년	출원일로부터 3년
효력범위 제한	약사법에 의한 조제의약, 조제행위 적용 可	약사법에 의한 조제의약, 조제행위 적용 不可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간접침해	물건발명, 방법발명 모두 적용 可能	방법발명과 물질발명은 不可

Chapter 3 디자인제도 및 권리화

1. 총칙(1-p134)

(1) 목적 등

- ① 목적: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 도모(사익>공익) → 디자인의 창작 장려 → (수요증대) → 산업발전 이바지함
- ② 특성: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대상으로 하는 바 제3자에 의한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은 반면에, 권리범위가 협소한 특성

2. 성립요건(1-p137)

(1) 디자인의 정의 : 물품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2) 물품성 일반

- ① 의의 :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
- ② 부정예 : 합성물의 구성각편(조립완구의 구성각편 제외)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예외: 네온관)
분산물 또는 입산물의 집합(단, 각설탕, 고품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등)
부동산- (判) 한증막 : 부동산
예외: 조립가옥, 공중전화박스 등(전체로 관념되는 것)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거래시 정형성이 있다면 물품성 인정 [예] 아이스크림 등
- ③ 물품명: 물품구분표 지정→보통 사용하는 물품 명칭→용도의 최소단위“○○○용 부재”
- ④ 유사판단 : 용도와 기능 기준

(3) 완성품 vs 부품

- ① 부품- (독립거래대상 및 호환)가능성 : 디자인등록대상(判)
- ② 부품-완성품(이용관계O)

3. 등록요건(1-p142)

(1)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기타 절차상 요건
1. 法 33①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디자인일 것 포함) 2. 法 33①-신규성 3. 法 33②-창작성 4. 法 34-부등록디자인	1. 法 27-외국인 권리능력 2. 法 3-등록받을 수 있는 자 3. 法 39-공동출원	1. 法 46①②-선출원주의 2. 法 33③-확대된 선출원주의 3. 法 62①iii-조약 위반 4. 法 35-관련디자인 5. 法 37④-일부심사등록대상 6. 法 40-1디자인 1출원 7. 法 41- 복수디자인 8. 法 42- 한 벌 물품 9. 法 62③-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

(2) 공업상 이용가능성

- ① 내용 : 공업적 생산방법(2차/ 1차·3차 X)/
동일 물품(통상지식자의 합리적 해석으로 같은 물품) /
양산 가능(가까운 장래)
- ②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 일품제작용 저작물(단, 응용미술저작물 공업성 有)
자연물
서비스 디자인
구체성을 결여한 디자인

(3) 신규성

- ① 출원시 기준, 일반수요자 기준
- ② 객체 : 동일·유사(물품의 동일·유사 전체)

(4) 디자인 유사판단

- ① 판단방법 : 물품혼동설(일반수요자 기준)
- ② 관찰방법 : 육안관찰, 외관관찰, 전체관찰, 간접대비관찰
- ③ 물품의 속성에 따른 기준
 - 유사의 폭은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넓게
 -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비중
 -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 재질,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유사판단요소X

(5) 신규성 상실의 예외

- ① 시기 : 상실일부터 12월 이내
- ② 취급 : (적법) 신규성이 상실(제33조 1항 1호·2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 창작성

- ① 인용대상: 국내·외 주지 형태(모든 물품)
 - ▶ 전용의 상관습이 있는 주지의 디자인(이종물품간)
 - ▶ 공지(1호 및 2호) 디자인(결합)(모든 물품)
- ② 창작성이 부정되는 예 : 그대로 모방/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

(7) 선출원주의

- ① 같은 날 출원 : 협의 불성립시 모두 거절/ 공보 게재(단, 공서양속 反 제외).
- ② 동일인 : 선출원주의 적용 거절이유 통지. 관련디자인 등록 가능 통지
- ③ 출원일 늦춤 : 요지변경이 등록 후 인정된 경우

(8) 확대된 선출원

- ① 당해 출원디자인이 타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일부 vs. 전체)
- ② 예외 : 등록여부결정시 출원인 동일(창작자 X)

(9) 부등록 디자인

- ① 제34조 제1호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② 제34조 제2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③ 제34조 제3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④ 제34조 제4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필연적 형상, 준필연적 형상(공적 표준화 + 사실상 표준화)
- ⑤ 제34조 제3호 만 : 출원시 기준.

(10) 1디자인 1출원 주의

- ① 1디자인 1출원일 것(法 40①)
 - ↳ 1물품에 관한 1형태
 - 위반 : 물품명 병렬(예) 라디오 겸용 시계 등, 예외 : “xx부설(부착) xx”
- ② 정당한 물품의 명칭 기재(法 40②)
- ③ 취급 : 이의신청, 무효사유 해당 X

4. 심사 및 출원절차(1-p156)

(1) 출원서류(도면)

- ① 도면의 역할 : 디자인의 특정, 보호범위 판단기준, 디자인자료
- ② 도면 같음 : 사진 또는 견본(모형 X), 3D 도면
- ③ 기재사항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만)

(2) 심사 일반 : 심사청구(X), 재심사청구(O)

5.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 (1) 보정
- (2) 분할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가능
- (3) 신청에 의한 공개(강제공개 X) : 최초 등록여부결정등본송달 전까지 신청 가능.

6. 디자인권 등

- (1) 이의신청(일부심사대상만)
- (2) 디자인권의 범위
 - ①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창작내용의 요점 X
 - ② 적극적 효력 및 소극적 효력 (동일·유사)
- (3) 이용·저촉관계(선행<후행)

7.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가능(1-p172)

8. 특유 디자인 제도 등(1-p174)

(1) 부분디자인

- ① 부분디자인 대상물품- 통상물품(물품명: 독립거래대상이어야)
- ② 도면 : 등록(실선), 그 외(파선, 무채색, 곤란-유채색 可), 경계선(일점쇄선)

(2) 글자체 디자인

- ① 인정
- ② 성립요건 : 기록, 표시, 인쇄 등 사용/ 공통적 특징 형태/ 한 벌의 글자꼴
- ③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 사용 및 그 결과물 효력 제한/ 보호범위 제한적 해석

(3) 동적 디자인(인정)

(4) 화면디자인 및 화상 디자인(인정)

- 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 ② 화상 :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 한정

화상의 부분 포함

(5) 관련디자인(法 35)

- ① 등록요건 : 주체의 동일성
 기본디자인 존재
 기본디자인출원일 ~ 1년 이내
 자기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
- ② 관련디자인권
 - 관련디자인권 독자적인 권리범위(종속성 有)
 - 종속성 : 기본디자인 존속기간 만료일(함께 만료)
 - 독립성 : 관련만 대상으로 무효 or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可

(6) 한 벌 물품 디자인

- ① 성립요건 : 전체로서 형태적 통일성
- ② 한 벌 물품 디자인권 : 하나의 디자인권

(7) 일부심사등록제도

- 거절이유 - 신청(공지)원확
 제35조 → 제62조 제3항
- 단, 정보제공 있으면 거절 가능

(8) 복수디자인

- ① 등록요건 : 동일 분류내 100개 디자인까지 1출원 可
- ② 등록여부결정 → 디자인별 가능, 일부라도 거절이유 치유X(해당디자인만 거절)
- ③ 디자인별 권리

(9) 비밀디자인

- ① 비밀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 단축·연장 가능(회수 제한X/ 3년 초과 不可)
- ② (원칙) 열람 不可 : 동의, 재심(소송) 당사자나 참가인
- ③ 행사상 제한 : 침해금지(예방)청구권(증명서면 사전 제시 要)
 손해배상청구(과실추정 배제)

Chapter 4 상표제도 및 권리화

1. 총칙(1-p183)

(1) 목적, 기능, 정의규정

- ① 목적: 상표보호→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도모→ 산업발전 이바지 및 수요자 이익보호
- ② 기능: 자타상품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
- ③ 정의규정
 - 상표- 상품(서비스)을 타인상품 식별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 표장-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출처 사용하는 모든 표시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① 부정경쟁행위 : 등록·미등록 상표 불문
- ② 영업비밀 요건 : 공개되지 아니할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일 것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될 것

(3) 특유상표

색채상표(색채만의 상표 인정),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시각성이 없는 상표(소리, 냄새)

(4) 특유제도 -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인정 ⇒ 상표법 적용(法 2③)

- ① 단체표장 - 통상(상품 + 서비스), 지리적 표시(상품)
 - 효력 : 권리주체 ≠ 사용주체(법인 사용 可)
 - 변동 : 이전제한 → 법인 합병시 특허청장 허가 얻은 경우에만 이전 可
사용권·질권 설정 X
- ② 증명표장 - 품질 및 특성 등 증명·보증
 - 요건 : 출원인 사용x, 출원인의 상표출원,등록과 유사하면 안됨(단, 상품 무관)
 - 효력 : 권리주체와 사용주체(타인) 분리
 - 변동 : 이전제한→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허가받아 이전 可
사용권·질권 설정 X
- ③ 업무표장- 비영리업무 영위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5) 상표의 사용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
- (나)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양·인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유통행위)
- (다) 광고행위 - 광·정·거·수 표시부족 + 전시 또는 널리 알려야
- (라) 표시행위- 표장의 형상, 소리 or 냄새, 전기통신회선 제공정보에 전자적 방법 포함

2. 등록요건(1-p190)

(1) 상표등록요건 일반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기타 절차상 요건
1. 정의규정 불합치(法 2①) 2. 식별력(法 33) 3. 부등록사유(法 34)	1. 외국인의 권리능력(法 27) 2. 등록 받을 수 있는 자(法 3) 3. 法 34③	1. 선출원주의(法 35) 2. 조약위반(法 54 ii) 3. 1상표 1출원주의(法 38①) 4. 이전제한규정 위반(法 48②후단·④⑥⑧) 5. 단체표장 등 특유요건(法 54 iv~vii)

(2) 자타상품식별력

- ① 식별력에 따른 표장 구분(식별력 정도)
 보통명칭 표장 < 기술적 표장 < 암시적 표장 < 임의선택표장 < 조어표장
- ② 제33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문자만)
 - 처음부터 보통명칭 + 보통명칭화(방지책: 형용사적 O, 동사·소유격 X)
- ③ 제33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 동종업자 기준
- ④ 제33조 제1항 제3호(기술적 표장)
 - 산지 : 인식만 있으면 족함/ 주산지 不要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만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 제3호(산지에 한함)의 예외 인정(法 33③).
 -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수요자 기준
 -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
- ⑤ 제33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 옛이름, 애칭, 별칭 인식되면 적용 가능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방위각 표시가 결합된 경우에도 인식되는 한 해당.
 -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 X
- ⑥ 제33조 제1항 제5호(흔한 성)
 -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 X
- ⑦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 X
- ⑧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 보충적 규정
- ⑨ 제33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요건 -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사용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상품에 대한 출원일 것
 - 판단 - (시기) 判例 : 등록여부결정시 기준
 (방법) 엄격하게 해석·적용(判)
 - 제33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상표가 제33조 제2항에 의해 식별력 취득 후 등록
 받은 경우 → 상표권 효력 제한 X(적극설)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1-p200)

①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대한민국의 국가·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대한민국·공공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기호(계획X) 기장(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국장, 군기, 훈장 등에 나타나는 무궁화(적용)
나목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상표법조약 체결국 국기(국가 승인 불문)
다목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표장(민간단체도 포함)
라목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의 문장·기·훈장·포장·기장,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약칭·문장·기·훈장·포장·기장(지명X)
목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기호

② 제34조 제1항 제2호

-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③ 제34조 제1항 제3호

-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단,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4조 제1항 제4호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⑤ 제34조 제1항 제5호

-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단,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⑥ 제34조 제1항 제6호

- 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예외 - 상대적 부등록사유 / 승낙자(法 90①(1))

⑦ 상표의 유사판단

- 전체적 관찰(원칙) 분리관찰 및 요부관찰(보완) / 이격적 관찰, 객관적 관찰
-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원칙적 유사
- 단,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비유사
- 문자상표 : 호칭 중요

⑧ 제34조 제1항 제7호(등록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상품(동일인 간 적용X)

⑨ 제34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 미등록주지상표: 후등록배제효(O), 상표법상 사용금지효(X). 단, 부경법상 사용금지효(O)

⑩ 제34조 제1항 제11호(지명상표)

- 혼동 염려 또는 희석화 상표(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 오인)

⑫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⑬ 제34조 제1항 제13호(모방상표 등의 방지)

(4) 선출원주의(등록주의 下) : 확대된 선출원 규정 없음

3. 상표등록출원 절차(1-p215)

(1) 1상표 1출원주의

- (다류, NICE국제분류) 상품이나 서비스업 동시 지정 가능
- 거절, 이의, 정보(O) 무효(X)

(2) 방식심사

- 출원일 인정(한인성취상품) - 보완명령 must → O : 특허청 도달일(출원일 인정)
- 절차보정

(3) 실체보정

-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감축, 정정, 석명, 부기적인 부분 삭제)
- 부적법 : 보정각하(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 可).

(4) 분할출원

- 2 이상 지정상품 분할 → 상표권도 분할可
- 실체보정 가능 기간내
- 효과(적법) : 출원일 소급

(5) 변경출원

- 유형 : 상표·단체표장·증명표장 상호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통상상표출원
- 효과(적법) : 출원일 소급

(6) 조약우선권

- 상표·상품(동일성), 우선기간(6개월)
- 판단시점 소급효

(7) 출원시 특례

- 요건 - 박람회 출품한 날~6개월 / 상표·상품(동일)
- 효과(적법) : 출원일 소급(선출원주의 예외)

4. 심사 및 등록절차

(1) 일반

- 심사순서 : 출원 순위(심사청구제도 없음)
- 우선심사 O

(2) 출원공고

(3) 손실보상청구권

- 요건 : (원칙) 공고 후 경고
- 업무상 손실상당액

(4) 이의신청

- 요건 : 누구든지(예외 無), 공고~2개월내, 거절이유와 同一
- 보정 :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내
- 3인의 심사관합의체 심사·결정
- 결정 : 이유有(거절결정), 이유無(등록결정) - 이의결정 자체 불복X

(5) 등록여부결정

- 지정상품 일부가 거절이유 해당되면 그 지정상품만 거절결정
- 직권보정 : 출원공고결정할 때/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 재심사의 청구 :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 직권 재심사 : 상표등록결정 출원 / 명백한 거절이유(-1상표 1출원) 발견

(6) 등록절차

- 등록료(일시납 / 연차료X / , 2회 분할납)
- 등록의 효력 : 상표권(효력발생),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제3자 대항)

5. 상표권(절차)

- (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반영구성 있음) : 존속기간만료 전 1년내, 심사X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有
-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절차(실체심사O) / 효과(합체)

6. 상표권의 효력(1-p222)

(1) 상표권 일반

- 상표권 설정등록일부터 10년
- 적극적 효력(동일), 소극적 효력(동일·유사, 지리적 표시 동일)
- 보호범위 - 출원서 기재 상표, 기재사항(시각성 없는 상표-시각적 표현)
상표등록출원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기재 상품
- 대한민국 영토 내에만(속지주의 원칙)
- 권리소진 인정 - 규정 없고 학설과 판례

(2)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① 제90조 제1항 제1호(法 34①(6)과 대응)
 - 자기의 성명상초서인 또는 지명한 아예필약
 -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할 것
 - 등록 후 부정경쟁목적 사용X
 -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시 기준
- ② 제90조 제1항 제2호 : 法33①(1)(3)과 대응
 - 제3호 : 입체형상(식X)+문자나 도형(식O)
 - 제4호 : 法33①(2)(4)와 대응, 보통사용(무관), 부정경쟁 목적(무관)
 - 제5호 : 法34①(15)와 대응

(3) 진정상품병행수입

- 동일한 상표가 외국과 국내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에 의해서 국내에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거나 부착을 허락해서 제조된 진정상품이 제3자에 의해서 국내로 병행해서 또는 경쟁적으로 수입되어 오는 것
- 허용 여부 - 오인·혼동 여부(국제적 권리소진이론)

(4) 저촉 : 이용관계X

7. 상표권의 변동

(1) 상표권의 이전 : 유사 상품 함께 이전

(2) 사용권

- 전용사용권- 제3자 대항요건
- 법정사용권(2개), 강제사용권(無)
- 法98(저촉, 존속기간만료, 부정경쟁 목적 X)→ 혼동방지표시청구권 부여
- 法99(선사용권) → 출원 전 국내 사용(준비 X)
출원시 특정인의 상품표지 인식(영세상인 제외)

부정경쟁목적 X

-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 소멸 : 취소심결 확정(직권 취소 X)

8.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1-p230)

(1) 본국관청

- ① 국제사무국에서 방식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이 이뤄지며 국제공고하게 됨.
- ② 본국관청 출원일이 국제등록일로 인정.
- ③ 본국관청 접수일~2월 이후 국제사무국 접수 → 국제사무국 접수일이 국제등록일.

(2) 지정국관청

- ① 표장에 대한 보정 인정 X
- ②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일률적으로 존속기간 갱신 가능.
- ③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Chapter 5 저작권제도

1. 총칙(1-p242)

- (1)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2) 정의규정(제2조)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포함.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포함.
- 음반 : 음(음성·음향을 말함)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 포함).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 제외.
- 음반제작자 :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 불문)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 배포 :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

2. 저작물(1-p243)

(1) 저작물

- ① 성립요건 :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것 : 외부로 표현되어 객관화되어야 함.
철학적이거나 숭고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정신적인 내용이 표출되면 족함.
 - 창작성이 있을 것 :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 표절하지 않았어야 함.
창작성의 정도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음.
사상(Idea)이 아니라 표현의 형식(Expression)을 보호하는 것 (Idea/Expression Dichotomy).
 - 기타 : 유형물에의 고정 不要, 즉흥적 연주나 원고 없이 하는 강연 등도 저작물.
적법성(윤리성) 없어도 저작물성은 인정.
- ② 저작물성의 판단 :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
반드시 저작물 전부가 완성되어야 성립되는 것 아님
(예컨대, 미완성 교향곡)
- ③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음악과 가사(결합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순수 미술작품과 응용미술저작물 예시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단 정지된 영상은 사진 저작물
 -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 2차적 저작물

- ①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② 요건 : 원저작물이 연상될 것
독립한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로 개편을 가해야 할 것(그렇지 않으면 복제물)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 등 교차에 있어 원저작물 감득해야 한 것
- ③ 취급 :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저작자 및 2차적 저작자 쌍방의 허락을 필요로 함.
원저작물이 소멸되었다 하여 2차적 저작물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3) 편집저작물 : 인정

데이터베이스→ 창작여부를 불문하고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보호범위→ 편집물에 구현된 표현상태 보호.
전체적인 편집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편집저작물의 미치지 않음.

(4) 업무상 저작물

- ① 요건 :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업무상 작성할 것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프로그램)
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것
- ② 취급 : 법인 등이 저작자,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5) 공동저작물 : 저작권의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음. 이익배분→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불명확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

(6) 보호받는 외국인의 저작물

- 조약에 의한 보호(체약국 국민)
- 거주주의 → 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 공표주의 → 대한민국내에서 최초 공표 및 외국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표.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외국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의 보호 제한 가능.

(7)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 ① 내용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3)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② 취급 :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일체 인정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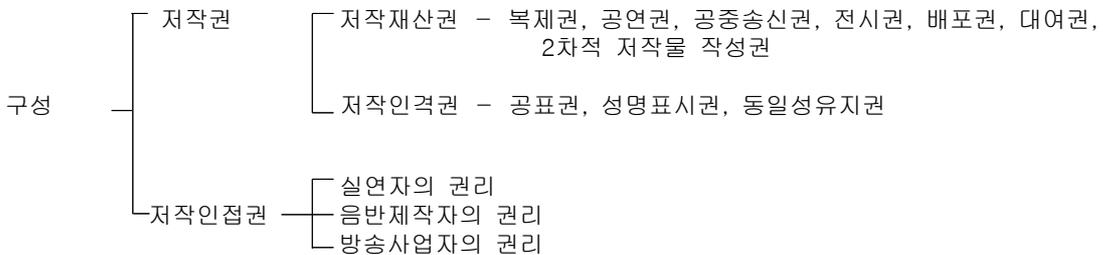
3. 저작자

- ① 의의 : 저작물을 창작한 자
보조자, 감수자(단순 지적 또는 조언), 주문자는 저작자가 아님.
- ② 저작자 추정
 - 저작물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
 - 공연 또는 공중송신의 경우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
 - 저작자로 실명 등록되어 있는 자
- ③ 저작권자의 추정 : 무명 저작물로서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

4. 저작권(1-p250)

(1) 저작권 일반

- 의의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과 소유권은 분리가능
-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
절차나 형식의 이행 不要(무방식주의)
- 구성



(2)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① 공표권
 - 성질 : 소극적인 권리, 일회성
 - 공표권의 제한 : 저작자가 저작재산권 양도 등을 설정한 경우 저작물의 공표 동의 추정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본 양도시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동의 추정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기증한 때 공표 동의 추정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원저작물도 공표 간주

- ② 성명표시권
 -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표시하지 않을 권리
 - 제한 :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동일성유지권
 -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제호 : 내적 보호 인정, 외적 보호 불인정
 -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면 허용)
 - i)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ii)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iii)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iv)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v) 그 밖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 ④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저작자만 행사 가능(행사상의 일신전속성)
저작자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귀속상의 일신전속성)
- ⑤ 저작자 사망 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3) 저작재산권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① 내용 : 복수의 이용권으로 구성된 포괄적 권리로서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
7종의 지분권으로 제한 열거(가분성)
- ② 복제권 :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포함.
- ③ 공연권
- ④ 공중송신권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단순링크→ 전송권 침해 X
딥링크(deep link)→ 전송권 침해 X, 성명표시권 침해 가능
- ⑤ 전시권 :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⑥ 배포권
- ⑦ 대여권 :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프로그램
- ⑧ 2차적 저작물 작성권

5. 저작재산권의 제한(1-p254)

(1) 구체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재판절차를 위하여 또는 입법·행정 목적의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③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④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 교육기관 등에서의 복제 등
 - 교육받는 자의 복제·전송 :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 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⑦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
정당한 범위안이어야 함(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됨).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함.(예컨대, 괄호, 토)
- ⑧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비영리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의 경우
- ⑨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 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⑪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배포
- ⑫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점자로

- ⑬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한국수어로
- ⑭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녹화
- ⑮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 등에 의한 원본에 의한 전시 : 그의 동의를 얻은 자도 포함
 - ↳ 한계: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등

(2)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취급

- 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의한 제한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 자유이용이 허용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③ 출처 명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④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기타 저작재산권의 한계(1-p258)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①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저작물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 ②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저작물 :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사유)

- ①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
- ②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 ③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7. 저작재산권의 행사(1-p260)

(1)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2)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가능 : 이용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제3자에게 양도 가능.

(3)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가능

(4)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가능

(5) 저작재산권의 소멸원인 : 보호기간 만료

- 상속인 부존재
-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 저작재산권의 포기

8. 저작권법상 등록제도 및 배타적 발행권 등(1-p264)

(1) 저작권법상의 등록제도

- ① 저작권 자체에 대한 등록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
 -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침해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 추정
 -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의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단,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추정하지 아니함.
- ② 저작재산권 등의 변동(양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 : 제3자에게 대항 가능

(2) 배타적발행권 및 설정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정해 줄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설정출판권 :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
-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의무 :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9월 이내에 발행할 의무(특약이 없는 한)
계속 발행할 의무
저작재산권자 표시의무
- 저작자의 권리 : 배타적발행권자 등이 다시 발행하는 경우 저작물 내용에 대한 수정·증감권
-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 단, 영상화를 위한 경우 5년.
- 동의있어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원칙) 소멸 후에는 배타적발행권 등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발행물을 배포할 수 없음.
(다만) i) 특약이 있는 경우,
ii)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발행물을 배포하는 경우 예외 인정.

9. 저작인접권(1-p268)

(1) 실연자의 권리 :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단, 실연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미치지 않음.
대여권(녹음된 상업용 음반)
실연방송권. 단,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는 미치지 않음.
전송권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2) 음반제작자의 권리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권

공연권
동시중계방송권

(4) 저작인접권의 발생 등

- ① 발생 :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할 때, 방송을 한 때
- ② 보호기간: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 그 방송을 한 때로부터 70년간

10. 특례(1-p271)

(1) 데이터베이스

- ①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②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짐.
 - 데이터베이스의 개별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 안됨.
다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소재 그 자체나 소재의 저작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③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 ④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① 저작재산권자의 영상화 허락시 각색, 공개상영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
- ② 영상화를 허락한 날로부터 5년내에는 재영상화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음.
- ③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는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
- ④ 실연자의 권리 중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과 전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추정.
- ⑤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미공표시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3)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 ①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②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가능 :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 ③ 업무상저작물은 공표될 것 不要
- ④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 조치를 취한 경우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③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① 기술적 보호조치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됨.
- ② 권리관리정보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권리관리정보 등의 제거·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6) 기타

- ① 저작권위탁관리업 :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 ② 분쟁의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11. 조약(1-p276)

- ① 베른협약
- ② 세계저작권협약(UCC): ©표시에 의한 방식주의 완화.
- ③ 제네바협약: 음반제작자 보호
- ④ WTO/TRIPs
- ⑤ WCT(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 ⑥ WPPT(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 ⑦ 로마협정(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Chapter 6 지식재산권의 분쟁(심판과 소송)

1. 특허권 등 침해(1-p306)

(1) 침해 일반

① 특허권 침해의 특수성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인 바, 침해가 용이한 반면, 침해의 적발 및 입증의 곤란으로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특허법에서 특별규정을 두어 보호를 강화.

② 성립요건 : 유효한 특허권 존재

- 보호범위내
- 업으로 실시
- 정당권원 없을 것
- 손해배상·신용회복(고의·과실)
- 침해죄(고의, 책임능력)

③ 침해의 유형

구분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관례
문언침해	ABC	ABC	침해
균등침해	ABC	ABC'	침해

(2) 간접침해

- ① 성립요건 :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 사용X
- ② 구제 : 민사상 구제 O, 형사상 구제 X

(3) 구제

▷ 민사상 구제

- ① 침해금지·예방청구 : 물건폐기·설비제거-부대청구
가처분신청은 침해금지청구만
- ② 손해배상청구(§128①, 고의·과실 要) → 무효심결확정일(소멸시효 기산점)
· §128 ② 손해액 계산(A+B 합산)
 - A - 침해자의 양도수량(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권자 등이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X 침해행위 없다면 얻었을 권리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B -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실시권 허락 불인정되는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손해액추정 → 침해자의 이익액
- ⑤ 합리적 금액 상당액 청구 가능
- ⑥ 초과액 청구 可(고의 or 중과실 없다면 - 참작 可)
- ⑦ 변론의 전취지 등에 의한 법원의 손해액 직권 인정 可
- ⑧⑨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3배)

- §128의2 : 감정사항 설명의무
- §129 : 생산방법추정
- §130 : 과실추정(cf. 상표법 → 고의 추정)
- §132 : 자료제출명령

③ 신용회복청구

④ 부당이득반환청구

▷ 형사상 구제

	징역	벌금	친고죄 등
침해죄	7년 이하	1억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비밀누설죄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비친고죄
위증죄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비친고죄
허위표시죄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비친고죄
거짓행위죄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비친고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친고죄

2. 특허법상 심판총론(1-p284)

(1) 흐름

- ① 심판부 구성(3인 or 5인 심판관합의체, 심판장)
- ② 심판장(방식심리, 서행대방수): 위반시 심판청구 결정각하(불복可)
- ③ 심판관합의체(심판청구요건 심리)→ 위반시 심결각하(불복可)-반드시 답변서 X
- ④ 본안심리
 - ▷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주의(심리는 공개, 합의는 공개 X)
 - ▷ 직권주의 : 직권탐지, 직권진행
- ⑤ 심결 : 이유 有(인용심결), 이유 無(기각심결)부담
 - ▷ 불복 : 등본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
 - ▷ 심결확정(일사부재리) :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2) 심판의 종류

- ① 결정계 :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 ② 당사자계 : 통상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

3. 특허법상 심판각칙 등

(1) 심판

- ① 거절결정불복심판 : 결정등본송달받은 날~30일내, 인용(취소 환송-기속력, 재판)
- ② 통상의 무효심판
 - ▷ 요건
 - 주제 : 이해관계인(§33①본문, §44는 특박권 가진 자만) 또는 심사관
 - 사유 : 거절이유 - §42③(2), §42⑧, §45, §47②후단
+후발적
 - 시기 : 존속中, 소멸후 可(-무효심결확정)
 - ▷ 청구항별 일부 청구·취하·심결 可
 - ▷ 무효심결 확정 :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 특허의 정정 인정 :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분명한 기재의 명확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X)
출원시 특허 可
- ③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 ④ 권리범위확인심판 : 적극적(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
소극적(이해관계인)
존속기간중, 청구항별 청구 可

확인심결, 침해소송과의 관계(기속력 X)

- ⑤ 정정심판 : 특허권자만 청구 가능
존속中, 소멸후 可 → 단 취소결정 확정 or 무효심결확정(-후발),
취소신청 or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中 안됨.
- ⑥ 정정무효심판
- ⑦ 통상실시권허락심판

(2) 특허취소신청

- ▷ 요건 :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청구항별
- ▷ 이유 :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공지, 공연실시 제외), 확대된 선출원, 선출원
특허공보게재 선행기술 기초 이유 제외
- ▷ 결정 : 취소결정(언제나 처음부터), 기각결정(불복X)

(3) 재심 : 대상(확정된 취소결정 or 심결)

(4) 특허소송(1-p302)

- ▷ 구조 : 특허법원(1심)
- ▷ 원고(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자)
피고(결정계-특허청장, 당사자계-타방당사자)
- ▷ 시기 : 등본송달받은날~30일내(부가기간, 직권)
- ▷ 불복 : 판결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 ▷ 인용판결 확정 : 필수적 환송(기속력)

4.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 (1) 간접침해 ○
- (2) 형사상 구제 : 침해죄(친고죄), 무단촬영 등 죄 있음

5. 상표법상 침해

- (1) 간접침해 ○
- (2) 민사상 구제
 - 고의추정(등록상표임을 표시해야)
 - 법정손해배상청구 可
- (3) 형사상 구제 : 침해죄(비친고죄), 비밀누설죄 없음

6. 상표법상 심판 등

- (1) 무효심판(확정시 소급효)
- (2) 취소심판(확정시 장래효)
 - ① 제119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 ② 제119조 제1항 제2호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및
제5호 [상표권자 이전 등 부정사용]
 - ③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등 불사용]
 -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3) 권리범위확인심판

7. 권리침해 판단 및 침해에 대한 구제(1-p330)

- (1)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 저작물성이 있어야 함.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함.
의존성이 있어야 함.
- (2) 침해에 관한 판단기준 : 침해인정 → 접근(access), 현저한 유사성, 공통의 오류
침해부정 → 합체의 원칙, 사실상 표준, 필수장면
- (3) 침해로 보는 행위
- ①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②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 소지 행위
 - ③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저작인격권 침해 간주)
- (4)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① 침해정지(예방) 청구
 - ② 손해배상청구 : 과실의 추정 → 등록되어 있어야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1천만원(영리 목적으로 고의 5천만원) 이하)
 - ③ 명예회복 등의 청구
 - ④ 부당이득반환청구
 - ⑤ 기타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신청 가능
- (5)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 침해로 보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
(원칙) 친고죄이나, 상습적, 거짓등록, 부정발행죄 등은 비친고죄
양벌규정 있음.

제2권 지식재산 창출 · 보호 · 활용

Part 1 지식재산 창출

Chapter 1 지식재산 경영

1. 지식재산 경영 환경의 변화(2-p19)

- (1) 지식재산은 중요한 경영자산이자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옵션
- (2) 변화 요인
 - ① 비실시기업(NPE : NON-PRACTICING ENTITY)의 대두
 - ② 기술의 융합
 - ③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 ④ 지식재산제도의 세계적 조화

2. 지식재산 경영의 이해(2-p23)

- (1) 경영(MANAGEMENT)이란 조직의 목표설정으로 시작하여 실행에 이르는 과정
- (2) 지식재산 경영이란, 지식자산을 이용하여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 (3)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 경영
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설치, 지식재산 감사, 특허 DB의 탐색, 특허획득전략

3. 전략적 특허(2-p63)

- 전략적 특허(STRATEGIC PATENTING)의 의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
- 용도 전략
 - 개선 전략
 - 조사 전략
 - 위장 전략
 - 제휴 전략
 - 소송 전략

4. 지식재산 경영체계의 구축(2-p48)

- (1) 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의 3단계
 - 초기 단계 : 창업 단계의 기업, 영업 비밀에 의존하는 경향
 - 성장 단계 : 지식재산 체계와 규정이 마련되며 출원이 많아짐, 내부 전담 인원 및 조직이 만들어지고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수행이 일반적
 - 성숙 단계 :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CIPO가 임명되어 전체적인 조직의 목표와 지식재산 전략의 일치 노력이 이루어짐

(2)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법론

관찰(observe)-방향설정(orient)-결정(decide)-실행(act)

(3) 일반적인 지식재산 전략의 종류

- 지식재산 공백 탈피 전략
- 미니멀리즘 전략
- 횃불(burning stick) 전략
- 갑옷(suit of armor and shield) 전략
- 지식재산 덩불(IP thickets) 전략
-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전략
- 협상카드(bargaining chips) 전략
- 창과 방패 전략
- 상호 파괴(Mutual destruction) 전략
- 특허 괴물(Patent troll) 전략
- 무상 전략

(4) 피라미드형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 전략 (Edison in the Boardroom의 5단계)

- ① 방어단계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 자산을 이용하여 경쟁자의 공격을 회피하는 단계
- ② 비용관리단계 : 비용의 관리와 함께 지식재산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단계
- ③ 가치획득단계 : 지식재산을 경영의 수단으로 취급, 지식재산으로부터 얻게 될 가치를 규정
- ④ 기회통합단계 : 경영 측면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지식재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
- ⑤ 미래형성단계 : 기업을 위한 미래의 예측 및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과 이노베이션을 통한 가치 창조 모델 개발

5. 지식재산 조직(2-p40)

- (1) 조직의 지식재산 전략을 실행하고, 성과와 미비한 점을 분석,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실행 조직이 필요
- (2)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
 - 중앙집중형,
 - 분산형
 -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 설립
IPHC(지식재산지주회사 : intellectual property holding company)

6. 특허 취득 및 포트폴리오 구축(2-p66)

- (1) 내부로부터 특허권을 취득
- (2) 외부로부터 특허권을 취득
 - 특허권의 매입
 - 특허권의 라이선싱
 -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특허권의 획득
 - 기업 인수, 합병에 의한 특허권의 확보

7. 디자인 취득과 경영 전략(2-p98)

- (1) 선행 디자인 조사
- (2) 디자인 등록 가능성 예측
- (3) 디자인 모방행위 예방 : 부분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디자인등록의 표시 활용

8. 상표 취득과 브랜드 경영 전략(2-p102)

- (1) 브랜드는 브랜드 경영, 브랜드 확장처럼 기업의 경영, 마케팅 측면에서 자주 사용
- (2) 상표는 상표법, 상표분쟁처럼 법률, 보호요건, 소비자혼동방지 등의 측면에서 주로 사용
- (3) 상표의 개발→조사→출원→등록에 이르는 권리화 단계, 등록상표의 적절한 사용과 라이선싱 등 활용 단계, 상표권 침해 단속 및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보호 단계, 상표권의 평가/갱신 등 유지·관리 단계의 업무로 구성

9. 저작권의 취득과 경영전략(2-p112)

- (1) 창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
- (2)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의 취득

10.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응 수단(2-p85)

- (1) 심사단계에서의 정보 제공
- (2) 특허무효심판
-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4) 실시권 존재의 주장

Chapter 2 지식재산의 발굴

1. 연구개발과 발명(2-p127)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성격

구분	연구성격
기초연구	.연구 주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지식을 얻은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학적인 지식을 넓히지만 바로 특정 상품에 적용되지 않은 연구
응용연구	.특정목적을 위해 지식 또는 이해를 넓히고자 수행하는 연구 .상품화, 공정개발에 관해 특정한 상업적 적용을 위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연구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고유한 물질, 기구, 소자, 방법론의 개발에 관한 연구

2. 조직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p130)

- (1) 조직의 성격
- (2) 과업의 특성
- (3) 프로세스

3. 일반적인 발명기법(2-p132)

- (1) 더하기 기법
- (2) 빼기 기법
- (3) 구멍 뚫기 기법
- (4) 크기 바꾸기 기법
- (5) 모양 바꾸기 기법

4. 트리즈 기법과 발명(2-p134)

(1) 트리즈의 기본개념

- ① 트리즈(TRIZ) : 창조적 문제 해결 이론
- ② 전 세계 특허조사를 통한 네 가지 발견
 - 창조적 문제 정의
 - 발명의 수준
 - 발명의 유형
 - 진화의 유형

(2) 트리즈를 이용한 문제 해결

- ① 모순 행렬을 이용한 기술적 모순의 해결
- ② 분리 원리를 이용한 물리적 모순의 해결
 - 시간의 분리
 - 공간의 분리
 - 부분과 전체의 분리

- 조건의 분리
- ③ 효과와 현상을 이용한 문제 해결

5.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2-p145)

- (1) 발명(제안) 보상
- (2) 출원 보상
- (3) 등록 보상
- (4) 실시(실적) 보상
- (5) 처분 보상
- (6) 출원 유보 보상
- (7) 기타 보상

Chapter 3 특허정보 조사

1. 특허정보 조사(2-p150)

(1) 특허조사

- ① 특허조사 : 특정 조건에 맞는 특허 문헌이나 모집단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 ② 목적
 -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 경쟁사나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 핵심기술이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특허를 발굴하기 위해
 - 공백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 특허조사의 종류

- 서지사항 조사
- 특정기술 조사
- 유효성 조사
- 침해여부 조사
- 계속 조사

(3) 특허조사의 3요소

- 기술적 표현
- 기술적 관점
- 조사범위

2. 키워드 종류(2-p155)

- (1) 표현상의 분류 : 축약형 표현, 형태적 표현, 묘사형 표현, 기능적 표현, 외래어 표현, 오기 및 비표준 표현
- (2) 성격별 분류 : 기술 주제, 필수 구성요소, 해결과제 및 효과, 용도 등
- (3) 의미상 분류 : 광의의 키워드, 협의의 키워드, 특정 주제 키워드, 신조어
- (4) 사용상 분류 : 핵심 키워드, 확장 키워드

3. 특허 분류(2-p157)

(1) 기술을 코드 형태로 분류한 것

(2) 특징

- 계층 구조
- 수시 또는 주기적 개정
- 참조 정보가 함께 제공

(3) 분류의 종류

- 국제특허분류(IPC)
-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 일본독자분류(FI, F-term)

4. 특허 정보 조사(2-p168)

- (1) 특허 데이터베이스
 - 키프리스(KIPRIS)
 - 웹스(WIPS)
 - 구글 Patents
 - 미국·일본·유럽특허청

- (2) KIPRIS 검색식(연산자)
 - and(*)
 - Or(+)
 - Not(!)

Chapter 4 특허정보 분석

1. 특허정보 의미 및 가치(2-p179)

- (1) 넓은 의미의 특허 정보 : 발명이 출원되어 소멸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적 정보, 권리변동 사항, 인용참증, 패밀리특허 정보 등
- (2) 좁은 의미의 특허 정보 : 특허 출원 후 기술 공개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공개공보와 등록된 특허에 대한 등록공보에 기재된 사항
- (3) 넓은 의미의 특허 정보는 서지정보와 기술정보, 권리정보, 법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2. 특허맵(Patent map)(2-p181)

- (1) 복잡한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한 분석 결과의 표현

(2) 역할

- 경쟁 주체의 기술개발동향 및 사업전략 파악
- 중복 연구 방지
- 기술동향 파악 및 연구개발의 방향성 예측
-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3) 작성순서

- 분석 범위 선정
- 기술분류표 작성
- 검색식 작성
- 검색 및 데이터 입수
- 정량분석
- 정성분석

3. 특허정보의종류(2-p180)

- 1차 정보
- 2차 정보(가공, 요약)
- 3차 정보(1·2차 정보 접근 용이하도록 서지사항 가공)

4. 특허정보 분석의 목적과 유형(2-p182)

(1) 기술정보적 측면

- 기술개발 동향
- 핵심기술 파악
- 틈새기술 파악
- 유망기술 파악

(2) 권리정보적 측면

- 침해가능성 파악
- 문제특허 파악
- 권리상태 파악

- 특허망 구축

(3) 경영정보적 측면

- 기술, 상품 개발 동향
- 연구개발 동향
- 시장 참여 현황
- 사업 전략 수립

5. 특허정보 분석 절차(2-p186)

- (1) 테마 선정
- (2) 특허 조사
- (3) 기술 분류
- (4) 데이터 가공
- (5) 특허 분석
 - 정량분석
 - 정성분석
 - 인용분석
 - 지표분석
- (6) 결론 도출

Part 2 지식재산 보호

Chapter 1 특허출원의 결정 및 절차

1. 외부 전문가 아웃소싱(2-p200)

(1) 아웃소싱

기업 내부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유통 등을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

(2) 핵심업무에의 집중과 비용의 절감

회사 내 특허 전담 조직이 광범위한 지식재산 업무를 모두 할 수는 없으므로 사내에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와 아웃소싱하는 것이 효율적인 외부업무로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2. 아웃소싱 분야

- 조사 및 분석 업무
- 특허명세서 작성 및 심사 대응 업무
- 특허 분석 업무
- 침해 소송 관련 업무

3. 전자출원 절차(순서)

- 특허고객번호 신청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
- 인증서 등록
- 문서 작성 S/W 및 서식 작성 S/W 설치
- 명세서 서식 작성
- 온라인 제출
- 제출결과 조회

Chapter 2 지식재산의 유지 및 관리

1. 연구개발 관리 전략(2-p214)

(1) 연구개발의 시작

- 과제 선정
- 절차 계획
- 과제 검증

(2) 연구개발의 실행

- 비밀정보 관리
- 특허관리 매뉴얼
- 연구노트
- 특허출원

2. 특허권 유지 전략(2-p233)

- * 특허 유지 여부 결정
 - 1단계 : 유지 여부 결정의 기간
 - 2단계 : 권리 유지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 3단계 : 청구범위 분석
 - 4단계 : 특허인용도 분석
 - 5단계 : 청구범위 분석 및 인용도 분석 결과 검토
 - 6단계 :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최종 검토

3.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2-p231)

- * 관리시스템의 기능
 - 출원 및 등록 관리
 - 메일, 문서, 전자 결재
 - 데이터베이스 연동
 - 기술거래, 라이선스, 기술사업화 관리

Chapter 3 지식재산의 분쟁 방어

1. 분쟁대비전략(2-p237)

- (1)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및 권리의 확보
- (2) 계약에 의한 기술의 보호
- (3) 내부적인 정보의 관리
- (4) 특허의 보증·면책 요구
- (5) 해외 전시회 참가시의 분쟁대응
- (6) 침해로 인한 분쟁의 대응역량 확보
- (7) 경쟁자에 대한 특허 감사
- (8) 경쟁자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2. 특허분쟁 방어자의 단계별 대응 전략(2-p249)

- (1) 경고장 수령 단계
 - 특허분쟁 대응 팀 구성
 - 경고장 및 특허권자 분석
- (2) 특허권 분석
 - 유효성 분석
 - 권리범위 분석
- (3) 무효화 검토
 - 무효화 절차
 - 무효화 자료 조사
 - 표준 특허와 FRAND
 - 소송에서의 항변
- (4)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경우의 대응 방안
 - 실시 중지
 - 회피 설계
 - 대응특허 검토
 - 실시권 계약 또는 특허 매입
- (5) 침해 주장이 부당한 경우의 대응 방안
 - 기본 전략 확인 및 일관되고 탄력적인 대응
 - 협상과 소송
 -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의 고려
- (6) 경고장 회신
 - 침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고장에 대한 회신
 - 내용이 충실히 기재된 경고장에 대한 회신
 - 경고장 회신 시 주의할 점
 - 협상 제안
 - 회피설계 시도

3. 특허침해소송의 공격자 전략(2-p266)

(1) 사전 조치

- 침해정보 입수
- 입증자료 확보
- 침해 분석
- 침해자 분석

(2) 구체적인 공격방법

- 경고장 발송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금지가처분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침해죄 고소
- 행정적 절차

4. 비실시기업(NPE) 대응(2-p270)

(1) 비실시기업의 의의

자신이 직접 실시, 제조, 판매 등을 하지 않고 특허권, 저작권 등을 이용하여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개인 또는 기업

(2) 비실시기업과의 분쟁 대응 전략

- ① 최초 요구에 능동적 대응
- ② 지피지기
- ③ 적의 무기 인지
- ④ 소송지 다툼
- ⑤ 무효 전략
- ⑥ 같은 피고들과 협력
- ⑦ 반소(Counterclaim) 제기
- ⑧ 특허심사 과정 조사
- ⑨ 마크만 히어링 활용
- ⑩ 공판 전략

5. 라이선스 전략의 종류(2-p286)

- (1)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
- (2) 인수 전략
- (3) 전략적 제휴 전략
- (4) 조인트 벤처 설립

6. 재판 외 분쟁해결(ADR)(2-p292)

(1)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을 처리하는 제도

(2) 재판 외 분쟁해결의 장점

-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해결 가능
- 상호 합의에 따른 형식의 완화와 우호적인 분위기
- 비공개 진행으로 분쟁 사실과 영업비밀에 대한 제3자 접근 차단
- 원만한 분쟁 종결 시 당사자 간 감정 대립 완화
- 전문가의 참여로 유연하고 정확한 결과

(3) 재판 외 분쟁해결의 단점

- 절차보장과 사실관계 조사의 미흡으로 강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
-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의 강조로 공정성 침해 우려
- 소송에 비해 주관적일 수 있어 단순 절충식 판단 위험
- 일방 당사자 불복시 시간과 비용 낭비 초래

(4) 재판 외 분쟁해결의 종류

- 알선 및 주선
- 조정
- 협상 및 화해
- 중재

Part 3 지식재산 활용

Chapter 1 지식재산의 사업화

1. 지식재산 사업화 유형(2-p303)

- 새로운 벤처 창업
- 기존 기업의 매수
- 합작 투자
- 지식재산 라이선싱
- 전략적 제휴
- 지식재산의 매각

2. 기술창업의 핵심요소(2-p311)

사람, 창업 아이디어(기술, 제품, 서비스), 시장, 자본

3. 지식재산과 라이선싱(2-p317)

(1) 지식재산 제공(Licensing out)

- ① 기술 마케팅의 준비 및 실시
- ② 라이선싱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
- ③ 라이선싱 계약의 실행 및 사후 관리

(2) 지식재산 도입(Licensing in)

- ① 기술도입의 추진 타당성 검토
- ② 기술도입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
- ③ 기술도입의 실행 및 사후 관리

(3) 라이선싱 전략의 고려 요소

- ① 독점성
- ② 교차(상호실시권)
- ③ 추가 라이선스 필요성
- ④ 시장·지역 제한
- ⑤ 가격·수량 제한
- ⑥ 라이선스 이후의 기술개발
- ⑦ 기술지원
- ⑧ 로열티결정
- ⑨ 재라이선싱(sublicensing)
- ⑩ 독점금지·무역제한
- ⑪ 세금문제

Chapter 2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1. 지식재산 가치평가(2-p340)

(1)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필요성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싱이나 매각, 현물출자 등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 발생

(1)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의의 등

- ① 의의 : 기술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평가
- ② 필요성 :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싱이나 매각, 현물출자 등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 발생
- ③ 목적
 -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장래성 명확
 - 사업 전개 시나리오 명확
 - 사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
 -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치로 정량화

(2)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방법

-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 소득(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 비용(원가)접근법(cost approach)

(3) 지식재산의 회계처리

- ① 기업회계기준서 :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② 지식재산의 가치가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최대 20년)상각
- ③ 지식재산의 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여들게 하는 효과
- ④ 지식재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본 요건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배타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인정
 - 자산으로서 식별가능성
 - 자원에 대한 통제
 - 미래의 경제적 효익

Chapter 3 지식재산 금융

1. 지식재산 범위 관련 법률(2-p378)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지식재산기본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 주요 금융 현황(2-p380)

(1) 지식재산(IP) 담보대출

- 기술신용평가(TCB)기반 신용대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2) 지식재산(IP) 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3) 지식재산(IP) 투자

정보주도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간접출자를 통해